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	--------

제출일자	2010. 1. .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 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군세 세목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목적세 중 사업소세를 삭제함(안 제3조).
- 나. 종전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1조의2 신설).
- 다.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신설함(안 제2장제1절의2 신설(제23조의3 부터 제23조의5까지)).
- 라.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2장제5절 삭제(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 마.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되는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3장제2절 삭제(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5조, 제6조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그 밖의 개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6 ~ 2010. 1.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9조제1항 중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 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세조례」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2조부터 제23조의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1절의2(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3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 증명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주행세 5. 농업소득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8. (삭제 2005.5.25) ③ (본문 생략) 1. (생 략) 2. 사업소세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 (본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9조(납세의무자) ① <u>균등할의</u>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u>사무소 또는 사업소</u>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u>소득할의</u>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u>균등분</u>----- ----- ----- ----- <u>사업소</u>----- ----- ----- ----- ----- ----- ----- ----- ----- ----- ----- ----- ----- ② <u>재산분의</u>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u>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u>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u>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u> ② <u>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 50,000원 2. 법인의 세율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분	세액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현행	개정안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세조례」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현행	개정안
제 22조 (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삭 제>

현행	개정안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2005.5.17)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법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현행	개정안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사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23조 (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23조의 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법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신설>	제23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9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명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설>	제23조의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세율</th></tr> <tr> <td>소득세분</td><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tr> <tr> <td>법인세분</td><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tr> </table>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신설>	제23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5절 농업소득세	<삭 제>
제42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44조 (개간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 준공연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5조 (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46조 (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 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제 152조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47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400만원 이하</td><td>과세표준액의 100분의3</td></tr> <tr> <td>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td><td>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td><td>72만원+ 1,000만원 초과금액 의 100분의 20</td></tr> <tr> <td>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td><td>672만원+ 4,000만원 초과금 액의 100분의 30</td></tr> <tr> <td>8,000만원 초과</td><td>1,872만원+ 8,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72만원+ 1,000만원 초과금액 의 100분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72만원+ 4,000만원 초과금 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 8,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삭 제>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72만원+ 1,000만원 초과금액 의 100분의 2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72만원+ 4,000만원 초과금 액의 100분의 30												
8,000만원 초과	1,872만원+ 8,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48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50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삭 제>
제51조 (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의 2 (결정과 징수)①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결정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의 결정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업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당해 농업소득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사실상의 농업소득을 조사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3장 목적세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삭 제>
제96조 (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삭 제>
제9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삭 제>

현행	개정안
제98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제99조 (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삭 제>

현행	개정안
1.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0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 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삭 제>

현행	개정안
제10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삭 제>

관계법령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세·면허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담배소비세·도축세 및 레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 5의2. 지방소득세
- 5의3. 지방소비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 7의2. 주행세
8. 삭제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삭제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삭제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세
- 다. 레저세
- 라. 주민세
- 마. 자동차세
- 바. 주행세
- 사. 삭제
- 아. 담배소비세
- 자. 도축세
- 차. 지방소득세
- 카.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가. 도시계획세
- 나. 공동시설세
- 다. 지역개발세
- 라. 지방교육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세
- 다. 면허세
- 라. 레저세
- 마.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가. 공동시설세
- 나. 지역개발세
- 다. 지방교육세

③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 가. 면허세

나. 재산세

다. 삭제

2. 삭제

④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주민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주행세

마. 삭제

바. 담배소비세

사. 도축세

아. 지방소득세

2. 목적세

가. 도시계획세

나. 삭제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73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74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技藝),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분은 부과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제175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사업소 소재지
3. 법인 : 사업소 소재지

②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관 균등분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삭제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관 재산분

제176조의3(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76조의5(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3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6조의7(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관 통칙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0(비과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및 원조단체에 대하여 종업원분과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종업원분을 부과한다.
3.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그 밖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종업원분은 부과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5.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제176조의11(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9조의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관 소득분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2제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79조(소득부징수) 소득분(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의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분으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6조의11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9조의4(세액통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의5(징수교부금) 시·군은 제17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분을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관 종업원분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경상남도세조례」

제23조(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 ① 취득세의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 연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 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 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 장비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 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 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 연월일과 면허 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 중량·적재 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 기간 및 연간 이용 일수.
13. 취득 물건의 가격 및 필요 경비
14. 취득 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 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 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 계약서 원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영 제76조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물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취득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 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 연월일과 취득 원인
4. 재산 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 사항
6. 과세 표준액과 그 산정 근거
7. 그 밖에 참고사항

⑨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과세 물건이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